

중구문화회관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

1. 사용시간

구 분	시 간	비 고
오 전	09:00 ~ 12:00	
오 후	13:00 ~ 17:00	
야 간	18:00 ~ 22:00	

2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	비 고
		공연	행사	
공연장	오전	100,000	150,000	
	오후	140,000	190,000	
	야간	200,000	250,000	• 야간 대관 시 철수 시간은 21:30까지 하여야 한다.
전시실	1일	30,000		• 1일 사용시간은 09:00 ~ 18:00로 한다.
연습실	1회	40,000		• 공연장 대관 시 사용 가능

※ 비 고

- 1. 1회란 오전·오후·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·전시·행사를 말한다.
- 2.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.
- 3.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- 4. 준비 또는 여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.
- 5.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- 6. 휴게시간(12:00~13:00, 17:00~18:00)은 콘솔운용을 비롯한 모든 작업이 불가하다.
단, 재단측과 협의하여 휴게시간 변동이 가능하다.
- 7.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·풍물·클래식음악·대중음악·연극·무용·오페라·뮤지컬·영화 등을 말한다.
다만,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에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.
- 8. 영화·시예프(CF)·방송의 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로 정한다.
- 9.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.
 - 가. 30분 미만: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
 - 나. 30분 이상 ~ 1시간 미만: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
 - 다. 1시간 이상: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

3. 부대설비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 부대설비		기준	사용료	비고
피아노	그랜드 대형 (외산)	1회	60,000	• 피아노 조율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,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 • 피치(pitch)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 복구한다.
	그랜드 대형 (국산)	1회	40,000	
무대	덧마루	1일 기본 (66제곱미터)	50,000	• 덧마루의 설치.전환.해체 작업 및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		추가 (3.3제곱미터)	10,000	
	음향반사판	1일	70,000	
	댄스 플로어 (무용 매트)	1일	100,000	
	샤막(흑/백)	1일	10,000	
음향	기본 사용료	1일	100,000	• 음향 콘솔, 메인 스피커, 유선 마이크 3개, CD플레이어 1대 포함
	모니터스피커	1일 / 1개	10,000	• 앰프 포함
	유선 마이크 (다이내믹)	1일 / 1개	5,000	• 마이크 스탠드 포함
	유선 마이크 (콘덴서)	1일 / 1개	10,000	
	무선 마이크	1일 1채널	15,000	
	빔프로젝터 (15,000Ansi)	1회	200,000	

구 분 부대설비		기 준	사용료	비 고
조명	기본 조명	1회	100,000	• 콘솔 기구로 조종되는 조명 연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조명 사용료를 징수한다.
	무빙라이트 Spot	1일/대	50,000	
	무빙라이트 LED Wash	1일/대	50,000	
	무빙라이트 Beam	1일/대	10,000	
	PAR64 1킬로와트	1일/대	1,000	
	PAR46 250와트	1일/조	3,000	
	ERS 750와트 (SourceFour)	1일/대	1,000	
	포그 머신 ZR44/Hazer	1일/대	30,000	• 포그액 포함
	드라이아이스 Aqua3300	1일/대	20,000	
	스트로브 Atomic3000	1일/대	10,000	
	팔로우 라이트 Follow Spot 2킬로와트	1일/대	30,000	
냉난방	공연장	1시간	시설별 시간당 연료비(전기료 포함) 시가에 10% 가산	• 예열 시간을 포함한다. •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 • 냉방 : 7~8월 의무사용 • 난방 : 11~3월 의무사용
	전시실	1시간		

※ 비고

1. 1회란 오전.오후.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.전시.행사를 말한다.
2. 공연 시 전력 소비가 전체 시설의 전력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발전차를 의무 사용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3.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 설치한다.
4. 조명 연출 및 조명 콘솔, 무빙라이트, 팔로우 라이트 등 부대설비의 운영은 사용자가 한다.
5. 댄스 플로어 접착테이프, 드라이아이스 및 마이크 배터리 등 부대시설의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6. 사용자는 과실로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수선비용을 지불하고,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한다.
7.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.